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5일 11시 40분



목차

목차	2
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- 식품위생과	3
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	3

집단급식소 설치 · 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

2013.05.20 10:27 조회수 2780 등록자 관리자

- ✓
민원사무명
집단급식소 설치 · 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

- ✓
민원내용

- ✓
관계법령
「식품위생법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

- ✓
구비서류

 ※ 소재지 변경1. 집단급식소 설치 · 운영 신고증 1부2. 「먹는물관리법」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이 발행한 수질검사(시험)성적서 1부(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·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3. 삭제 ※ 소재지 외의 변경1. 집단급식소 설치 · 운영 신고증 1부2.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

- ✓
처리부서
식품위생과

- ✓
협의부서

- ✓
접수

- ✓
수수료

- ✓
처리기간


- ✓
기타사항

- ✓
흐름도

 신고서작성 (신청인) ▶ 접수 (처리기관) ▶ 서류검토 (처리기관) ▶ 결재 (처리기관)[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] ▶ 신고증 발급

- ✓
기타참고사항

 집단급식소 설치 · 운영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

첨부파일 전체(Zip)다운로드	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margin-right: 10px;">  </div> <div> <p>[별지 제7호서식] 집단급식소 설치 · 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(식품위생법 시행규칙).hwp (1477 hit/ 20.5 KB) ↓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미리보기 </div> </div> </div>
---	--

이전글

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 종료신고서

다음글

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신고서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